■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[별표 2]

위탁수수료의 요율(제18조관련)

1.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

위탁금액	요 율 (위탁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)	비고
10억원 이하	20/1,000 이내	1. "위탁금액"이란 기초조사비, 토지매입비,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, 권리 또는 지장물 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(이주대책사업 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등의 합계액을
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17/1,000 이내	말한다. 2.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 료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에 가산 한다.
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	13/1,000 이내	3. 기초조사,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 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·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분의
50억원 초과	10/1,000 이내	30의 범위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. 4.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 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.

2. 도시개발사업

	요 율	
공사비	(공사비에 대한	비고
	수수료의 비율)	
100억원 이하	90/1,000 이내	1. "공사비"란 재료비·노무비·일반관리비
		·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
		다.
		2. 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에
100억원 초과	80/1,000 이내	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, 설계ㆍ시공일
300억원 이하		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
		한다.

		3.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
		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.
300억원 초과	75/1,000 이내	4.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 공사
500억원 이하		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자와 수
		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
		하여 정할 수 있다.
		5.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
500억원 초과	70/1,000 이내	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
		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가산한다.
		6. 조사・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
		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		을 공사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.